

#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!  
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  
더불어민주당 강남 제3선거구 최영주 의원입니다.
  
-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 
「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 
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
  
-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  
- 서울특별시는 재해발생시, 초동 대처 등  
지역 재난관리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 
지난 2012년 12월 31일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며,  
2013년 12월에는 관내 25개 자치구의  
지역자율방재단 단장과 부단장 등을 회원으로 하는  
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가 구성되었습니다.
  
- 이에 자율방재단연합회는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 
응급복구를 위한 재난현장에 참여하는 등  
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.

□ 그러나, 상위법령인 「자연재해대책법」 및 동법 시행령에는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, 본 조례에는 해당 내용이 누락되어 있어 연합회의 활동 및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.

□ 이에 본 의원은 「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」에 자율방재단연합회 활동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실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,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.

□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, 본 개정안을 통해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며, 재난·재해 현장에 책임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,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